



보도자료

배포일시	2024.5.20.(월)
배포부서	홍보팀 (02-3219-5111~5112)
자료문의	사회법익보호팀 한상 팀장 (02-3219-5140)
이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kocsc.or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	

김정은 찬양가 '친근한 아버지' 시정요구 결정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류희림, 이하 '방통심의위')는 20일(월) 통신심의 소위원회(위원장 황성욱)를 개최하고, 북한의 선전가요인 김정은 찬양가 '친근한 아버지' 동영상(29건)에 대해 시정요구(접속차단) 의결했다.

- 해당 영상은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김정은을 '친근한 아버지'라 칭하며 “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”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, 찬양·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.

-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, “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'친근한 아버지' 뮤직 비디오에 영문·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,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, ▲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, ▲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, 미화·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”는 의견을 반영했다.

- 방통심의위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,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「국가보안법」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.